

[공모펀드 변경안내]

- 가. 펀드명 : 유진챔피언공모주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- 나. 변경시행일 : 2020년 9월 3일(목)
- 다. 변경 대상 서류 : 집합투자규약, 투자설명서
- 라. 변경 내용 : 공모주 투자전략 일부내용 추가 (POST-IPO 전략)

[증권신고서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u>신설</u>	<u>공모주 투자전략 일부내용 추가 (POST-IPO 전략)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① 주식 : 다만, 공모주 등(기업공개를 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,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로 발행하는 주식 및 이들 법인이 제3자 배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 등)에의 투자는 주식 투자비중의 50%이상으로 합니다.	① 주식 : 다만, 공모주 등(기업공개를 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,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로 발행하는 주식 및 이들 법인이 제3자 배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 등 <u>및 이러한 주식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</u>)에의 투자는 주식 투자비중의 50%이상으로 합니다.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[공모주 투자전략]	<u>신설</u>	<u>- 또한, POST-IPO 주식(시장에 신규 상장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의 주식)에 일부 투자하여 추가수익을 추구</u>

[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1.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하로 한다. 다만, 공모주 등(기업공개를 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,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로 발행하는 주식 및 이들 법인이 제3자 배	1.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하로 한다. 다만, 공모주 등(기업공개를 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,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로 발행하는 주식 및 이들 법인이 제3자 배

	<p>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 등)에의 투자는 주식 투자비중의 50%이상으로 한다.</p>	<p>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 등 <u>및 이</u> <u>러한 주식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한지</u> <u>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</u>)에 의 투자는 주식 투자비중의 50% 이 상으로 한다.</p>
--	---	--